

## ~중요 안내사항~



한부모 가족(저소득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 수령 완료)이 아닌 분

#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 안내

육아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**급부금 지급**을 실시합니다!

## 1. 지급 대상자

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(※한부모 가족분 급부금을 수령한 분은 제외)

① **2022년도 중에 실시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(지난번 급부금)의 지급 대상자**였던 분  
(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지난번 급부금을 수령한 분 또는 수령을 거부한 분)

② **2023년 3월 31일 시점에 18세 미만 아동\***(장애아의 경우 **20세 미만**)을 양육하는 부모 등으로  
**2023년 1월 1일 이후 수입이 급변하여 주민세 비과세 상당**의 수입이 된 분  
(※2024년 2월 말까지 태어난 신생아 등도 대상이 됩니다)

## 2. 지급액

**아동 1명당 일률적으로 5만 엔**

■지급을 받기 위해 **신청이 불필요한 경우**와 **필요한 경우**가 있습니다. 반드시 뒷면의 지급 절차를 확인해 주십시오.

\*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■어린이 가정청 콜센터 (접수 시간: 평일 9:00~18:00)

**0120-400-903**

자세한 신청 방법은 거주하시는 시·구·정·촌의 '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(한부모 가족 이외) 담당 창구'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3. 급부금 지급 절차

I. 2022년도 '저소득 육아세대에 대한 육아세대 생활지원 특별 급부금(한부모 가족 이외의 저소득 육아세대분)'의 지급 대상자였던 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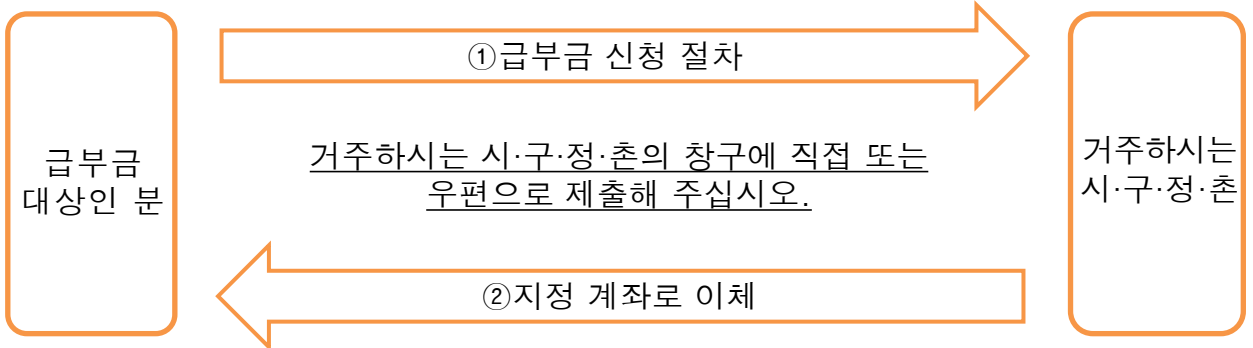
- ▶ 급부금은 **신청 없이**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▶ 시·구·정·촌별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2022년도 중에 실시한 저소득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을 지급한 계좌(2022년 4월분 아동 수당 또는 특별 아동 부양 수당을 지급한 계좌 등)로 이체합니다.

[주의하세요]

- ※ 급부금 지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급 거부 신고서를 시·구·정·촌에 제출해 주십시오.
- ※ 2022년도 중에 실시한 저소득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 지급 시에 지정한 계좌를 해지한 경우 등 급부금 지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체 지정 계좌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.

II. 위 이외의 분(예. 수입이 급변한 분)

- ▶ 급부금을 수령하려면 **신청이 필요**합니다.
- ▶ 신청서에 이체 계좌 등을 기재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거주하시는 시·구·정·촌의 **창구에 직접** 또는 **우편**으로 제출해 주십시오.
- ▶ 급부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지정 계좌로 이체해 드립니다.



'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급부금'의 "**전기통신금융사기**" 및 "**개인정보 탈취**"에 주의하십시오.

자택이나 직장 등으로 도·도·부·현/시·구·정·촌 및 어린이 가정청(의 직원) 등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전화나 우편물이 온 경우에는 거주하시는 시·구·정·촌이나 가까운 경찰서(또는 경찰 상담 전용 전화(#9110)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